

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



▶ 기본 사항

성명		생년월일	
연락처		대출일	
자택	주소		
	전화번호		

▶ 신청 내용

*해당란에 "V"또는 작성 바랍니다.

신청 사유	신용대출	신용평점이 50점 이상 상향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	
		재무상태(개인 연소득, 개인사업자 연 사업소득)가 대출시점*보다 15%이상 증가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	
		동일직장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	
		전문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(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변리사, 의사, 한의사, 법무사, 관세사, 감정평가사, 심판변론인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손해사정사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, 측량사)	<input type="checkbox"/>	
	담보대출	개인/개인사업자	신용평점이 50점 이상 상향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	재무상태(개인 연소득, 개인사업자 연 사업소득)가 대출시점*보다 20%이상 증가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	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	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법인	회사채 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	재무상태(영업이익)가 20%이상 개선이 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	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	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
대출시점* : 금리인하가 있었던 경우 금리인하요구 직전 수용시점 재무상태 적용

* 금리인하 요구권(상호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)이란?

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를 말합니다.

* 신청서류

- 기본서류 :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, 본인(실명)확인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소득증빙서류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기타 변동이 생긴 증빙서류

* 접수방법

- 지점방문
- 팩스 : 본점(051-637-9071) / 신용사업본부(051-637-9150)

*신청결과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(단,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)에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.

상기와 같이 금리인하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